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38	20	1992. 9. 3.	홍재조 순

의안 「금융기관 여수신이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결사항 「금융기관 여수신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외관계 한국은행법 제7조, 제65조
법규조항

제외취지 가계의 은행이용 편의를 제고함과 아울러 은행의 수신기반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의 예치한도를 각각 폐지 및 인상하고
가계우대정기적금의 가입제한을 완화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5-10



< 장 구 사 람 >

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췌

「한국은행법」 제7조

① (생 략)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한국은행법」 제65조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금융기관의 여수신이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 ~ 제5조 (성략) (신설)	제1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부칙 이 규정은 1992. 9. 7.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자 명시																												
<별표> 수신이자 및 기타자금금의 최고율	<별표> 수신이자 및 기타자금금의 최고율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이율</th></tr> <tr> <td>1. (성략)</td><td>(성략)</td></tr> <tr> <td>2. 저축예금</td><td>연 5.0% (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3,000만원 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td></tr> <tr> <td>3. 자유저축예금</td><td>연 11.0% (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2,000만원 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td></tr> <tr> <td>4.~ 9. (성략)</td><td>(성략)</td></tr> <tr> <td>10. 가계우대 정기적금</td><td>연 13.0% (실명의 1인 1계좌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 계약액은 1,000만원 이내, 다만, 세금융대충합통장으로 등 적금에 가입함에 따른 계좌제한도초과는 예외로 함)</td></tr> <tr> <td>11.~ 16. (성략)</td><td>(성략)</td></tr> </table>	구분	이율	1. (성략)	(성략)	2. 저축예금	연 5.0% (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3,000만원 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	3. 자유저축예금	연 11.0% (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2,000만원 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	4.~ 9. (성략)	(성략)	10. 가계우대 정기적금	연 13.0% (실명의 1인 1계좌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 계약액은 1,000만원 이내, 다만, 세금융대충합통장으로 등 적금에 가입함에 따른 계좌제한도초과는 예외로 함)	11.~ 16. (성략)	(성략)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이율</th></tr> <tr> <td>1.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r> <td>2. 저축예금</td><td>연 5.0% (실명의 개인에 한함)</td></tr> <tr> <td>3. 자유저축예금</td><td>연 11.0% (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5,000만원 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td></tr> <tr> <td>4.~9.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r> <td>10. 가계우대 정기적금</td><td>연 13.0% (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 계약액은 1인당 1,000만원 이내, 다만, 세금융대충합통장으로 등 적금에 가입함에 따른 계좌제한도초과는 예외로 함)</td></tr> <tr> <td>11.~16.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able>	구분	이율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저축예금	연 5.0% (실명의 개인에 한함)	3. 자유저축예금	연 11.0% (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5,000만원 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	4.~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가계우대 정기적금	연 13.0% (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 계약액은 1인당 1,000만원 이내, 다만, 세금융대충합통장으로 등 적금에 가입함에 따른 계좌제한도초과는 예외로 함)	11.~1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저축예금 예치한도 폐지 - 자유저축예금 예치한도 인상 조정 ○ 2,000만원 → 5,000만원 - 가계우대정기적금 가입제한 완화 ○ 실명의 1인 1계좌 → 실명의 개인
구분	이율																													
1. (성략)	(성략)																													
2. 저축예금	연 5.0% (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3,000만원 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																													
3. 자유저축예금	연 11.0% (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2,000만원 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																													
4.~ 9. (성략)	(성략)																													
10. 가계우대 정기적금	연 13.0% (실명의 1인 1계좌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 계약액은 1,000만원 이내, 다만, 세금융대충합통장으로 등 적금에 가입함에 따른 계좌제한도초과는 예외로 함)																													
11.~ 16. (성략)	(성략)																													
구분	이율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저축예금	연 5.0% (실명의 개인에 한함)																													
3. 자유저축예금	연 11.0% (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5,000만원 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																													
4.~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가계우대 정기적금	연 13.0% (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 계약액은 1인당 1,000만원 이내, 다만, 세금융대충합통장으로 등 적금에 가입함에 따른 계좌제한도초과는 예외로 함)																													
11.~1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 규 동 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세 의 사
39	20	1992 9 3	총재 조 순

제 목 인사 발령 (건규동의)

의결사항 : 아래와 같이 발령키로 의결

인사부소속 조사역 (부장급)	이 의 수	임 부 장 명 기획부 근무
목포지점 지점장	정 만	임 부 장 명 문서부 근무
감 사 실 감사역 (부장급)	정 중 학	임 부 장 명 전자계산부 근무
기 획 부 부 장	김 종 태	명 인사부 근무
문 서 부 부 장	정 덕 탕	명 계리부 근무
금융경제 연 구 소 소 장	박 재 준	임 부 장 명 조사제1부 근무
조사제1부 부 장	이 수 길	임 소 장 명 금융경제연구소 근무
국제금융부 부 장	김 명 대	명 자금부 근무
문 서 부 실 장 비 서 실 (부장급)	김 원 태	임 부 장 명 국제금융부 근무

부산지점	지점장	박 순 태	임	수석검사역
			명	감사실 근무
싱가포르 사무소	사무소장 (부장급)	홍 순 익	임	지점장
			명	부산지점 근무
섬사제4국	수석부국장	강 희 문	임	지점장
			명	목포지점 근무
인사부소속	조사역 (부장급)	홍 일 표	임	지점장
			명	제주지점 근무
감 사 실	검사역 (부장급)	제 정 오	임	지점장
			명	강릉지점 근무
외환관리부	수석부부장	조 동 일	임	지점장
			명	울산지점 근무
감 사 실	수석검사역	김 원 태	임	지점장
			명	강남지점 근무
인 사 부	부 장	김 종 국	면	부 상
계 리 부	부 장	김 태 영	면	부 상
자 금 부	부 장	심 훈	면	부 상
제주지점	지점장	안 홍 지	면	지점장
강릉지점	지점장	허 전	면	지점장
울산지점	지점장	이 조 방	면	지점장
강남지점	지점장	김 문 식	면	지점장

(92. 9. 3자)